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

<b>신청구분</b>		<input type="checkbox"/> 신혼부부 /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정(미성년 2자녀 이상)			
<b>인적 사항</b>	신청자 <small>(등기소유자)</small>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세대구성 현황	전남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구성 인원 수 : 00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b>대출 현황</b>	대출심사 신청일	202년 월 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 신청일 기재		
	대출은행				
	상품명				
	대출금액	금	원		
	대출기간				
<b>주택 매입 현황</b>	구입일자	202 . 00. 00.(등기 접수일)	구입가격	금	원
	주택형태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택주소				
<b>가족 구성원 현황</b>  ※ 전체 가구 구성원 기재	관계	성명	생년월일 <small>(주민등록 앞번호)</small>	주소 <small>(주민등록기준)</small>	비고 <small>(미성년, 만12세 이하 시 기재)</small>
	본인		000000-1		
	배우자				
	자녀				
	〃				
	〃				

○ 신청자격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①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자녀(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③ 대상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대출상품 및 도시주택보증공사, 은행에서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만 허용

○ 신청 제외대상

-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차지원 대상자 등

○ 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②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③ 보금자리·디딤돌 대출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분양권 포함)
-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⑦ 그 밖에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동의

- 1. 제공 받는 자 : 전남도청, 시·군, 읍·면·동 등
- 2. 제공 목적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 3.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장애인돌봄지원법」 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주거급여법」 제24조, 「기초연금법」 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아이돌봄지원법」 제35조제4호, 「장애인돌봄지원법」 제39조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 「의료급여법」 제3조제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 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서식 4】**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외2서식] <개정 2021.7.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가구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가구원 성명 <sup>1)</sup>		신청자 본인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채배작물명)	( 원 )	( 원 )	( 원 )	( 원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sup>2)</sup>		원	원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산	□ 소 ( 마리, 원)	분양권	원		
		□ 돼지 ( 마리, 원)	조합원 입주권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회원권	원		
	기타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 <sup>3)</sup>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 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sup>4)</sup>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대리신청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5】

#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23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6】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납부자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내역

청구기간	. . ~		
총납부금액	금	원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요청 금액 (지급 기준액 * 월수)
			원

2023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개월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